

2022년 이용료 현황

☺ 2022년 재가급여[주야간보호수가] 월 한도액

구분 년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2년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79,600 (12일×49,790)
20%증액	1,784,200	1,621,000	1,493,900	1,282,200	-

※ 월 15일 이상 이용하시면 월 한도액의 120%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대별 주야간보호 수가

구분	3시간 이상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3시간 초과
2등급	34,210	45,880	57,070	62,870	67,420
3등급	31,580	42,350	52,690	58,080	62,280
4등급	30,140	40,910	51,250	56,620	60,840
5등급	28,700	39,450	49,790	55,180	59,400
인지지원등급	28,700	39,450	49,790	49,790	49,790

☺ 일일 본인부담 이용료 [1일 8시간~10시간]

구분	일일수가 A	본인부담금 B [A×15%]	일일비급여		일일이용료	
			C [중식/간식]	D [중식/간식/석식]	[B+C]	[B+D]
2등급	57,070	8,560	3,500	6,000	12,060	14,560
3등급	52,690	7,900	3,500	6,000	11,400	13,900
4등급	51,250	7,680	3,500	6,000	11,180	13,680
5등급	49,790	7,460	3,500	6,000	10,960	13,460
인지지원등급	49,790	7,460	3,500	6,000	10,960	13,460

※ 중식 : 2,500원, 석식 : 2,500원, 간식(2회) 1,000원

제5장 이용계약

제17조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② 이 장에서 “갑”은 이용자 또는 법적 대리인을 말하며, “을”은 센터를, “병”은 이용자의 법적대리인을 말한다.

제18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9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	내 역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비용중 일반은 85%, 의료급여수급자/경감대상자는 92.5% 기초수급자는 100% 보험공단이 지급.
		94%/91%	
		100%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9%이며,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등급 외 수급자 본인부담금 :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름			

제20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한 월요일~토요일(공휴일포함)07:50~20:00 일요일 09:00~17:3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23조 [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24조 [미이용 비용산정]

- ①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의거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